

장애학생 지도시 유의사항

관련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학교(교수 및 직원)의 장애학생 지원 의무

- 입학을 허가한 이상 학교(교수 및 직원)는 장애학생이 다른 학생과 동등한 조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동등한 학습권 보장

- 장애학생은 여느 학생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강의자료와 정보 등을 획득하고 지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해당 장애학생들이 요청할 경우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이외의 대체 형태의 자료(강의노트, 강의ppt, 파일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성실한 상담 및 지도

- 장애학생은 강의 수강에 있어서 자신의 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와 개별적으로 만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장애학생이 수강 과정에서 장애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충분한 시간과 인내를 갖고 성실히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인 신상 비밀보장

- 어떤 장애학생은 개인 신상에 대한 비밀 노출에 매우 민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모든 사항은 신중히 보호해야 하며, 장애와 관련된 상담 또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5. 개인 맞춤형 학습지도

- 장애마다 또는 같은 장애라 하더라도 그 기능적 제한의 정도에 따라 요구가 다르므로 장애학생의 개인별 지원 요구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교수 방법 또한 개인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6. 학생 본인의 의지 종종

- 굳이 지원을 요구하지 않는 장애학생에게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이 보여도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지원받을 것을 오히려 꺠리는 학생도 있기 때문입니다.

7. 장애학생의 시험지원

- 장애학생의 시험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필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뇌병변장애학생에게는 시험시간을 최소 1.5배 연장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8. 장애학생 행정지원 부서

- 본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행정지원은 학생지원처 소속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장애 학생 관련 사항은 장애학생지원센터(상영관 204호, 전화번호 890-1043)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